#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

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중독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자, 교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법 규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소　속: 가족복지과

○ 직　급: 사회복지 8급

○ 이　름: 박선미

○ 연락처: 052-290-4908